

제5기 달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수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2561
----------	------

제출일자 : 2024. 9. 30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주문

보건복지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 ~ '28) 수립에 따른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연계하고 대구시 컨설팅 결과 반영 등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추진 전략을 세부사업과 연계

<변경 전>		<변경 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4 개 전 략	고용 교육	3 개 전 략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3대 중점과제)
	소득		전생애 사회서비스고도화 (3대 중점과제)
	건강		사회보장체계 혁신 (3대 중점과제)
	사회서비스		

나.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추진 부서명 변경

다. 지역 여건에 대한 최신 데이터 반영

라. 2024년 시행계획 세부사업 주요 변경사항 수정(예산 등)

3. 변경 계획(안) : 따로 붙임

4. 향후일정 : 대구광역시 제출(10월 한)

5. 관련법령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8조

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참고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2022. 1. 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